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이현숙	5106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6번지
보험설계사 조민철	850915-*****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5-6번지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이현숙	前 흥국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현숙은 2012.9.14. ~ 2013.7.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20건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56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조민철	前 흥국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인 조민철은 2013.2.19.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 보장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2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